

[사 건 명] 행심 2017 - 1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6. 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 봉사 1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상급생 ◇◇◇◇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2017. 5.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에서 봉사 10시간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생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6.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6.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안이 학생들 사이의 논쟁이며, 한번 SNS상에 초대되어 응한 것이며, 초대된 사람들간의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이고 일회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일부 선배들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언행을 하였지만,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이후에 ◇◇◇와 여러번 마주쳤지만 서로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잘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SNS 상에서 수차례 욕설이나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상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최초 선배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해서 사소한 말다툼을 만들었고, 이후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오랜 시간 위협이 되는 대화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대화창에서 위협적인 말을 한 만큼, 사이버 따돌림 및 집단적인 상황에서 언어폭력으로 가법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7. 5. 1. ◇◇◇ 포함된 수학동아리 단체카톡방에서 청구인과 ■■■■과의 대화속에서 ◇◇◇가 ■■■■의 편을 들자, 청구인이 ◇◇◇에게 편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다.
- 2) 청구인은 2017. 5. 2. ○○○○가 초대한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방에서 ◇◇◇에게 ‘너무 이빠서 원펀치 하려고요’ ; ‘◇◇◇야 너 이제 앞으로 도망다녀야 돼’, ‘왜 내일도 없이 살려고 해 정 말’, ‘◇◇◇야 계속 씨부려 뭐해’, ‘XX년아’ 등의 말을 하였다.
- 3) 청구인은 2017. 5. 2. ◇◇◇와의 카톡방에서 “너 지금 좇되겨”라는 말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안이 학생들 사이의 논쟁이며, 한번 SNS상에 초대되어 응한 것이며, 초대된 사람들간의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이고 일회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2017. 5. 2. 페이스북과 카톡방 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청구인의 ◇◇◇에게 한 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일부 선배들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언행을 하였지만,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이후에 ◇◇◇와 여러번 마주쳤지만 서로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잘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양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청구인에 대한 점수가 4점으로서 학교봉사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폭

력이 청구인 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범한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폭행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